



제1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1.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기	H요 ····	 	. 5
1.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 ج
1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5	및 계획	 	17

제2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2.1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활용(입찰단계)	20
2.2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	. 24
2.3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 26
2.4 사히저격제 기억에 대하 서제저 고근여랴 가하 지원(기바조선)	. 30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3.1	사회적경제의 혁	¹ 신성장 기반 강호	<u> </u>	 37
3.2	사회적경제를 위	l한 지역의 자생··	상생기반 확충	 42
3 3	사회적경제의 진	축부야 다양화		 46

붙임

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	50
2.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	52
3.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 평가지표	54
4.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운영 현황	58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62
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67

제1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제1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 지역 통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으로 보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에게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임

또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임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은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일자리는 최고위 복지이며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 예술로 행복을 전한다.

지역사회에 이바지

사회적기업은 작지만, 느리지만 명품을 만든다. 창의성과 열정이 다양한 전문성과 결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뜻한 공동체 형성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알고 응원을 보내는 아름다운 이웃이 있어 사회적기업이 더욱 성장한다.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다면.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할 수 있다.

1.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③ 정의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 사회적기업이 공급기능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음

의의

-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구현의 촉진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역 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
- 공공기관의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
 -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

용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구매의 실효성 제고

◎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추진체계

고용노동부(총괄관리)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지침 수립 및 통보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관리 및 공고

정책방향 제시 예산 지원 및 관리 감독



정책제안 및 업무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업무지원)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지원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 관련 교육 홍보 업무



공공기관(구매이행)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작성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이행
- 소속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지원 및 관리



◎ 대상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총 847개 공공기관

〈 '20년 구매실적 및 '21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

국가		자치 단체				준정부	기타	지 방	지 방	특별	_
기관	광역	기초	교육청	공기업	기관	공공 기관	공기업	의료원	법인	총계	
	54	17	226	17	36	95	209	152	35	6	847

◎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 '20.11월 기준 2,704개소 활동(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丑人	Social Enterprise — 사회적기업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인증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사회적기업 인증)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인증기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유급 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 · 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1.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 공공(수요)기관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수요의 발생, 구매대상 품목확인. 구매방법 결정. 실제 구매의 단계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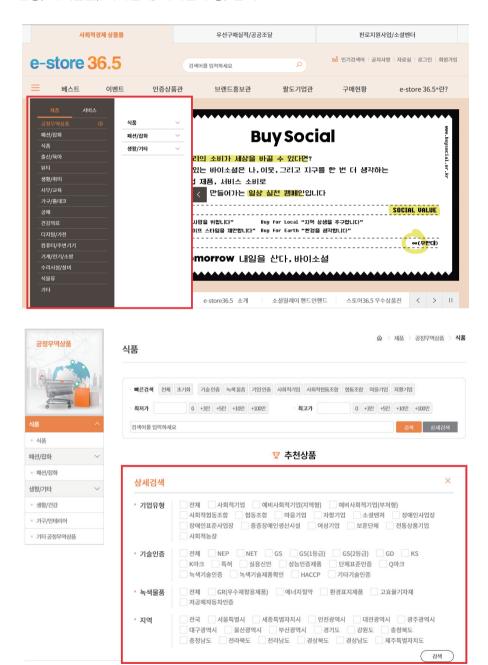


1단계: 구매대상 품목 확인 (온라인/오프라인/공공구매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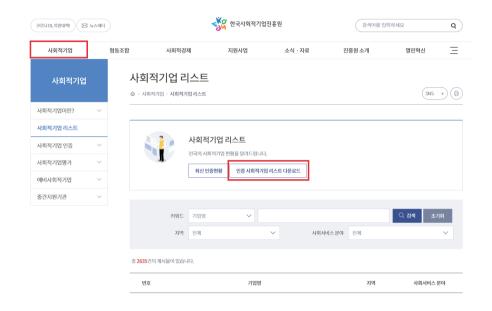
- 온라인
 - e-store 36.5(www.sepp.or.kr) 사회적경제 상품몰 접속
 - **(통합검색으로 찾기)** 화면 중앙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정보(상품명, 기업명) 검색 가능



- **(상품 찾기)** 중분류 또는 소분류 카테고리 메뉴로 상품 및 상품 상세정보 (기업유형, 기술 인증, 녹색물품, 지역필터, 가격필터 등) 검색



- (사회적기업 찾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검색메뉴에서 '기업명', '지역', '사회서비스분야' 검색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리스트에서 전체 사회적기업 확인 및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 오프라인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에 문의하여 구매

(2020년 11월 기준)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	강원	원주 토요점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110, 카페 닻별	033-763-2923
2	강원	원주 후레쉬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033-743-8383
3	강원	춘천 석사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3-3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033-253-0050
4	강원	춘천쿱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동내면 933-2 1층 〈쿱박스〉	033-256-0765
5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6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 중앙상가 1층	02-899-8972
7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8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031-316-0072
9	경기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031-938-9774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0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11	경기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031-902-3774
12	경기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13	경기	본오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031-437-8787
14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1층(송암빌딩)	032-343-0077
15	경기	분당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야탑동 757)	031-707-1024
16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5	031-715-6122
17	경기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031-347-0700
18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104호)	032-233-0072
19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032-326-1172
20	경기	수원영통점 (경기남부두레 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6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21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112-113호	031-435-0071
22	경기	시흥 정왕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시흥에코센터 2층	031-319-7521
23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제108-3호	031-413-0038
24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031-468-2800
25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26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032-342-0071
26	경기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27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031-319-7521
28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032-675-0072
29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6동 101,102호	032-621-7100
30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은행프라자)	031-311-3886
31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3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32	경기	인덕원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33	경기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031-889-8849
34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펠리스카운티아파트 아이파크상가내 102호~103호	032-652-0072
35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032-664-0081
36	경기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37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호	02-898-0071
38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39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1층 두레생협	031-683-3363
40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68-3 뜨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41	경기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사회적기업관 2층	031-511-5754
42	경기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031-919-9854
43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8-14	062-943-8216
44	대구	대구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벨리로13 진성빌딩 112호 마을의정원	053-959-0123
45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3-5 1층	042-224-7004
46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47	서울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02-445-8703
48	서울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3	02-975-7145
49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50	서울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마르쉐도르 3차 지하 1층	070-4432-3792
51	서울	낙성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02-883-8703
52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7호선 4번출입구 스토어36.5노원매장	02-3391-3650
53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54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두레생협	02-333-0518
55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1층)	02-2648-1005
56	서울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2단지 내 관리동상가 102호	02-2643-6077
57	서울	미성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21(신림동, 1층)	02-855-0495
58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미아동190-1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59	서울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02-537-8703
60	서울	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02-3492-9999
61	서울	방화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5 방화6단지아파트상가 105호	02-2662-6088
62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봉천동)	02-876-4490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63	서울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64	서울	북가좌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100 DMC 레미안102동 6호 행복중심생협	02-304-8704
65	서울	불광센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센터 1동 1층	02-357-6233
66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02-533-4578
67	서울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길19 상도브라운스톤상가 1층	02-826-3385
68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두레생협	02-3141-0518
69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 생협	02-3423-0518
70	서울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02-2643-6060
71	서울	아현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상가 111호	02-365-0615
72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73	서울	연남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8 1	02-325-9955
74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두레생협	02-715-0518
75	서울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02-713-0615
76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77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폴리스 105호	02-356-6233
78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센터 1층	02-735-7161
79	서울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1 건영아파트 제상가동 1층 126호	02-934-7999
80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81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가길 12, 102호 (창4동 성당입구)	02-900-9958
82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두레생협	02-2692-7117
83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956-1	032-466-2341
84	전북	전북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063-277-9435
85	전북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별관 1층(효자동 2가)	053-251-3388
86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 36.5제주점	064-749-2365
87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041-358-7161
88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60번길25-2 (구산남동732번지)	043-252-9484

• 공공구매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설치된 공공구매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상담(☎1566-5365)

〈공공구매 수요 품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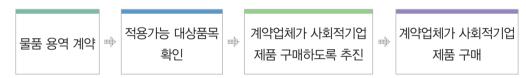
구분	구매사례	품목	
격려품 / 기념품	체육대회,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명절 등 기념일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세제, 숯 건강식품, 꿀, 차, 커피, 제과세트(쿠키, 빵, 떡, 초콜릿)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 세트 명함지갑, 카드지갑, 다이어리, 핸드폰케이스 양말, 넥타이, 손수건, 티셔츠, 앞치마, 가방, 파우치, 모자 공연표(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k-pop, 국악, 타악연주), 공정여행 티켓 자전거 	
공연	각종 행사 시 공연	• 오케스트라, 뮤지컬, k—pop, 국악, 타악연주	
도시락	체육대회 및 행사, 직원 식사	• 출장뷔페, 도시락	
식자재류	구내식당 식자재 공급	• 축산물, 유기농 농산물, 두부,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 세트	
사무실 소모용품	상시	 복사지, 토너카트리지,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LED 조명, 커튼, 블라인드 결재판, 파일철, 봉투, 종이컵, 화장지, 박스, 장갑 	
사무실 기호식품	상시	 건강음료, 차, 커피, 쿠키, 빵, 떡, 초콜릿, 잼 	
의류	회사 유니폼	• 유니폼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장 및 연수 프로그램	- 공정여행, 전통문화체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수업	
청소 / 환경 용역	상시(건물 관리)	•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재활용 쓰레기 처리, 세치 도배, 장판	
인쇄 / IT / 디자인 용역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현수막, 리플렛, 명함, 어깨띠, 기념패영상물, 웹디자인, 공간 디자인(건물외벽 등)	
기관 행사 축하용	개 소식 등 행사	• 꽃배달, 가구	
보건/의료	직원 건강관리	• 예방접종, 건강검진	

2단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직접구매/간접구매

- (직접구매)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 *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 으로 인정(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 단, 계약 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 보관하여야 함 (제출 불요)

〈간접구매 절차〉



•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 · 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 활용 가능하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5천만원 **까지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18.7.24)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19.3.5.)

•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 낙찰자 심사 ·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추진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3단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에 소개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 '공공기관 협업사업 및 희망상품 추천요청' 기능을 활용하여 구매 및 사업 추진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전국 88개소)에 문의하여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수요빈도가 많은 상품을 조달청이 미리 계약하여 등록한 사이트)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활용 구매
- 제품 특성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매 상담 및 주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 공고



⑥ 주요 사항

- **2019년 실적** 1조 2,829억원, 총 구매액의 2,50%
- **2020년 계획** 1조 2.989억원, 총 구매액의 2.55%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2019년 실적	51,255,571	1,282,950	2.50
2020년 계획 50,898,279		1,298,954	2.55

^{*}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0.04)

◎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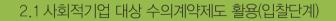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2019년 실적			2020년 계획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국가기관	10,284,315	88,208	0.86	9,355,788	73,499	0.79
자치단체	7,442,333	460,178	6.18	7,524,428	467,556	6.21
교육청	7,240,766	135,774	1.88	7,133,989	136,275	1.91
공기업	13,166,007	336,496	2.56	13,800,664	357,011	2.59
준정부기관	4,503,283	156,745	3.48	3,826,123	143,417	3.75
기타공공기관	5,893,238	53,608	0.91	5,894,292	74,730	1.27
지방공기업	2,263,160	45,186	2.00	2,834,454	40,772	1.44
지방의료원	232,840	5,848	2.51	227,003	5,553	2.45
특별법인	229,630	906	0.39	301,536	141	0.05
합계	51,255,571	1,282,950	2.50	50,898,279	1,298,954	2.55

^{*}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0.04)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확대방안



- 2.2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 2.3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 2.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급역량 강화 지원(기반조성)



제2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활용(입찰단계)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 제도 도입방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중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에 의한 견적을 통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확대되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구매실적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추진하였고 2018년 7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의 수의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3)") 및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능학(2018년 7월 24일 시행)
-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도 2018,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 5호의""5"의"다)")이 가능토록 하고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제1항제2호) 가능함(2018년 12월 4일 시행)

- 다만, 상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됨
 -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기업***등에 한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
- 2020년 현재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요건 충족시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에의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함
 - 특히 2020년 5월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1호, 2020. 5. 1., 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5호, 2020. 7. 14., 제정]으로 물품 및 용역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1억원(2인 이상 견적)까지 상향하여 적용 가능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적용방안 및 검토사항

-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으로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의 확대는 동종 유사 물품을 공급하는 타 우선구매 대상과의 차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각 지역내에서 구매 강점을 보이고 있는 물품, 용역에 대해 일정 고용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 구매건에 대한 수의계약 활성화를 검토할 수 있음
- 실제 지자체의 구매 또는 계약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매상황 하에서 각 공공 기관(지자체)별로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 일정 고용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제한경쟁 입찰 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추진사례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1) 제정목적 및 적용기관

(1) 제정일자: 2014, 5, 14

(2) 제정목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희망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 기업의 근로자 권리 보호. 계약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조달 조례 제정

(3) 적용기관

- 서울시 본청. 산하 본부 · 사업소. 투자 · 출연기관
- ※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본 조례 준용 가능

구분	조문 내용
제6조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준수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해 입찰참가회 확대, 우선구매 촉진
제8조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 가능 ▶ 기업의 사회적책임 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
제9조	서울시와 계약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정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함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내용 확인 · 지도
제10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전 과정 공개

2. 서울시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1) 제도 개요

(1) 희망기업 정의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개념

-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희망기업의 생산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희망기업의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희망기업 제품 구매실적 확대 방안

(1)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금액 범위에서 희망기업 제품 우선 구매

구분	기업 유형	금액 범위	
1인 견적 수의계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모든 금액 수의계약 가능 (직접 수행·생산하는 용역·물품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구 자기 거 아지마이 아드 게지 사이게야 기나	
	협동조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마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일상 경비	희망기업	1천만원까지 일상경비 집행 가능 (부가세 포함)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여성기업은 조례에 따른 희망기업은 아니나 편의상 위 분류표에 포함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평가방법 활용

-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과 용역의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수의계약 이상 규모인 경우 물품은 적격심사제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 용역의 경우는 적격심사제도.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주로 적용됨
- 특히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구매 건인 경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용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의 경우 조달청의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고 자체 조달은 개별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함.
 -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의 경우 기술용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기준을 적용함

•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평가방법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등록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들이 1억원 이상 물품을 납품요청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수요기관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단일 유형의 종합평가방식과 4가지 유형의 표준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에 우선구매 확대 관점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표준평가방식 중 **"사회적 약자지원(표준평가방식॥)"** "수요기관 선호도(표준평가방식N)" 유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 선정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 사회적 약자지원 표준 평가방식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대상에게 기본 평가점수 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대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평가방법을 선택하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 한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수요기관의 자체의 평가위원회 품명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선호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하고 상대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제공하는 청소, 사회복지, 문화 관련 용역은 공공계약 관점에서 일반용역에 해당되므로 수요기관에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제도의 기본평가항목 또는 신인도 평가항목에 사회적기업 관련 가점의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
 - * 현재 조달청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나공사 등의 물품 또는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의 신인도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구분	물품적격심사	일반용역적격심사	공사적격심사
조달청	2점	2점	사회적기업 공동수급 비율 3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10% 가산
서울특별시	1점	1.5점	_
경기도	1점	2점	-
세종자치시	1점	2점	_
부산광역시	1점	2점	-
광주광역시	1점	1점	_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통)	1점	_	_
LH공사	0.5점	1점	사회적기업 시공 비율 1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5% 가산
한수원	2점	2점	사회적기업 시공 비율 3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10%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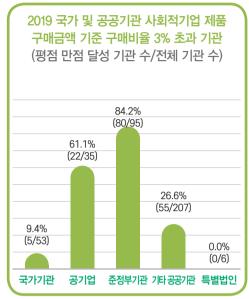
- 또한 신인도 가점의 형태는 아니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기본 평가항목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중심 평가) 평가시 사회적기업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로서 시공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음
 - * 신인도 가점 적용의 실효성과 사회적기업의 입찰참가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과 공동수급체(사회적기업의 참여비율 최소 30% 이상 등으로 기준설정)를 구성하는 경우 신인도 가점을 참여비율이 아닌 가점의 배점한도만큼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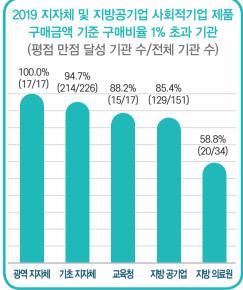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설정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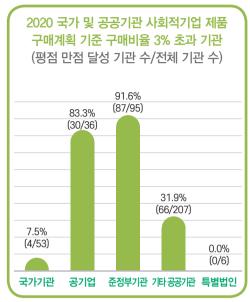
-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평가에서 정부정책지원 차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의무고용기업(단체)제품, 녹색제품 등이 있음
- 이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이며 현재 정부정책지원 평가항목에서 만점 비중은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총액의 3% 이상, 지방공기업의 경우 1%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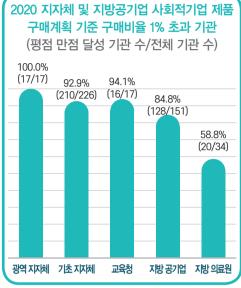






- 2019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수요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3% 초과 구매기관은 국가기관 9.4%(5/53), 공기업 61,1%(22/35), 준정부 기관 84,2%(80/95). 기타공공기관 26.6%(55/207). 특별법인 0.0%(0/6)로 나타났으며 국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달성(평점 만점비율 3%) 비율은 평균 36.3% 수준 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는 구매금액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1%(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역별 목표비율과 사회적경제 관련 9종 우선구매대상 실적 종합평가로 지방공기업 평가기준 적용)를 초과하는 광역지자체 100.0%(17/17), 기초 지자체 94.7%(214/226), 교육청 88.2%(15/17), 지방공기업 85.4%(129/151), 지방의료원 58.8%(20/34)로 나타났으며 지방의료원을 제외하고 평균 85% 내외의 구매실적을 기록하여 2017년 대비 5%p 이상 향상된 실적 기록함





- 한편, 2020년 구매계획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 비율인 3%를 초과하는 기관이 국가기관 7.5%(4/53), 공기업 83,3%(30/36), 준정부기관 91.6%(87/95). 기타공공기관 31.9%(66/207). 특별법인 0.0%(0/6)로 평균 42.9%의 공공 기관이 3%이상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실적 대비 약 6.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수요기관 유형별 2020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1.3%, 공기업 3.6%, 준정부기관 4.5%, 기타공공기관 2.7%, 특별법인 0.0%로 나타나 만점 평정 구매비율(3%) 초과 설정 추세와 동일한 평균 구매계획 비율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0년 구매계획 기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1%를 초과하는 광역지자체 100.0%(17/17), 기초지자체 92.9%(210/226). 교육청 94.1%(16/17). 지방공기업 84.8%(128/151). 지방의료원 58.8%(20/34)로 평균 86.1%로 2019년 실적 대비 소폭 상향된 계획 수립 결과를 확인함
 - * 수요기관 유형별 2020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3.1%. 기초지자체 6.1%, 교육청 1.9%, 지방공기업 2.4%, 지방의료원 4.9%로 만점 평정 구매비율(1%) 초과 설정 추세 대비 평균 구매계획 비율이 2018년 구매계획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국가기관 등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반적으로 각각의 구매목표비율 (평가지표 상 만점 기준)을 상회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다만 2018년 대비 2020년 구매계획의 목표비율 비교 시 국가기관 등은 평균 구매목표비율 설정 값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됨.
-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기반형 특화 상품 및 용역(서비스) 공급이 많은 점, 지역내 취약계층 등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이 적극적인 구매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에 대해 산하기관에게 일정비율(예: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 등) 이상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평가에서 반영하고 있음
 - * 수요기관 내에서 부서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확대 노력 구체화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 간 구매우선 순위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구매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목표 수준 설정 시 평가 대상 유형별(국가 또는 지자체)로 목표수준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경우 해당 목표비율 이상 구매비율을 설정하여야만 나머지 다른 평가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상대적. 으로 종합평가 결과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평가지표의 구매목표 달성 만점비율이 타 우선구매제도 평가지표에 비해 낮으므로 제한된 구매금액 내에서 평가결과를 고려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 모든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가 각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치적 측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 구매결과에 대한 평가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 실제 구매 의사결정은 평가 이외에 개별 우선구매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급역량 강화 지원(기반조성)

• 선제적 구매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우선구매제도에서 수요기관의 구매 및 계약담당자는 구매 의사결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품질 및 사후관리 곤란 등에 대한 우려임
-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있고 상용화 수준이 높아 규격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품질 및 가격 평가기준을 가지고 구매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 * 직접생산확인증명이 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또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구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아짐
- 그러나 수요기관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해당 수요기관에 특화되었거나 객관적인 품질 및 가격 평가기준이 없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구매의사결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
- 이는 사후적인 납품검사 및 가격조사 등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수요기관이 원하는 적기. 적시. 적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선제적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를 통해 추천

•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공급역량 강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공급역량 확대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상품,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와 함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급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인 강원도의 '강원곳간'과 경상북도의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는 다수의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판로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수요 매칭, 마케팅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개별 사회적기업 및 공급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가 부족한 경우 또는 복수의 물품과 서비스를 서로 다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통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활용 가능
-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인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판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거나 당사자 조직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 또는 주관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 사례1: 강원곳간

-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강원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물품을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몰
-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강원도내 수요기관(자)들에게 강원도 내 물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자인 사회적경제기업들 에게는 다양한 판로채널 제공
- * 웹사이트: http://gwgoods.com , www.강원곳간.com

- 사례2: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

- *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들의 공공부문의 수요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보다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추진
 - * 웹사이트: http://se종합상사.kr
 - * 경상북도 내 사회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 '경상북도사회적 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사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고객관계관리와 상품 기획, 구매, 판매와 같은 소비자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 전반을 지원함
- * 우수한 물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시장분석 및 판로개척. 수요기관 대상 판매촉진 활동. 경영지원/관리. 새로운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당사자 조직으로 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사인 사회적기업에게 통합적으로 지원함
- *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자가경쟁제품 이외의 제품으로서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이 자율적인 협회 등을 만들어 그들어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의 품질 수준을 단체표준 등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안내 가능함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과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품질 부실 및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구매기관이 선제적으로 일정한 생산기준과 품질요건을 설정하여 이를 공급자들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사전 품질이 검증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직접생산확인증명이 가능한 물품과 용역 이외의 사회적기업체 특화된 제품과 용역의 공급이 많은 수요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 사회적기업간 연계를 통한 공급가능 방법 채택

-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 적인 판로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로 다른 물품을 연계하여 납품요구 가능함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단계 경쟁 대상 납품 요구건으로 다수의 물품(세부품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납품 가능한 복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는 납품요구 공고를 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공급 가능한 물품의 수 최대 공급 가능 물량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복수의 사회적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해당 납품요구에 대응 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토록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2단계경쟁 제안 참여시 납품요구 품명수가 6개 이하인 경우는 참 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 계약상대자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0, 10 1.] [조달청고시 제2020-39호, 2020, 9, 29, 일부개정]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 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 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 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74(점) \times \frac{3(억원)}{6(억원)} + 60(점) \times \frac{2(억원)}{6(억원)} + 66(점) \times \frac{1억원)}{6(억원)} = 68(점)$$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 (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가점	0.4	0.6	0.8	1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표준평가방식Ⅲ의 채택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 허용 시 사회적기업에게 공급기회 확대 가능함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 3.1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장 강화
- 3.2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의 자생 상생기반 확충
- 3.3 사회적경제의 진출분야 다양화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8.13.)

현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되는 경제 · 사회의 양극화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 '17년 이후 부처별 · 분야별 총 19개 대책 수립 · 추진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종합대책, '17,10), 사회적금융 · 인재양성('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18)·협동조합('20) 설립 지원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

- * 취약계층 고용비중(%, '18): (사회적기업) 61 (협동조합) 423
-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伊(20%) · 佛(0,8%) · 벨기에(12%) 등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고용은 오히려 증가 ('17, OECD)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공공 ·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 보완.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역할 수행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 부문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및 방향을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선제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 R&D · 인재 · 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 ① 성장유망기업 통합지원체계 마련: 개별부처별 소규모 지원에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화
 - 소관부처가 창업 및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체계* 구축
 -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계부처 TF(기재부 · 중기부 공동주관)를 구성, 부처간 역할 조정

	현재 모습		미래 모습
지원대상	초기 창업기업 위주	»	초기기업(1~3년) + 성장기 기업(4년차 이상)
지원방법	칸막이식 지원 (부처별 소관 기업)	»	이어달리기 지원 (각 부처 – 초기기업, 중기부 – 성장기업 통합지원)
지원내용	단편적 지원 (초기 기술개발 위주)	»	전분야 연계지원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지원체계	각 부처별 운영	>>	범부처 협업 (기재부 · 중기부 주관 T/F)

② 우수인재 유입 지원

- ◆ 청년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경험** 및 **창업** 지원, 교육 · **훈련** 강화 추진
- (**일경험)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3차 추경)
- (창업)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검토, 지역기반 · 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 * ('18) 여성 · 글로벌 · 도시재생 등 6개 분야 → ('19) 8개 분야(관광 · 융합기술 추가) → ('20) 10개 분야 (특산물제조 등 추가)

-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확대하고(現 누적 12개 → '22년 누적 20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확충⁽⁾
 - 1)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
 - 2)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자 선발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안 마련·추진(서류평가시 가점,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강의 신설, '21~)
- 신중년 숙련된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해 대·중소기업, 전문가협회 등과 연계해 "재능 기부뱅크" 모집 등 활성화
- (재취업연계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수요에 맞춰 커리어 전환교육·인턴쉽 등 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채용관(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19.下~),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社당 최대 2명. 월 250만원限)과의 채용연계
- (전문멘토양성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세무·회계·노무 상담)을 위해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매칭 지원

	현행	현행 개선				
모집	개인 단위 모집 위주	>>	직능단체 단위 업무협약			
관리	단순 매칭 · 집합교육 위주	>>	1:1 매칭 맞춤형 교육 + 고용연계			

❸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 · 확산

- → 규모화 모델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연대사업* 지원
 - *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18년 평균 고용인원 : 사회적기업 20,7명, 협동조합 4.4명), 연대사업이 매출증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29,9%, '20년)
 - *(예) 원재료 공동구매 · 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이종(異種)현동조한**(기본법-개별법 상 현동조한) **가 공동사업** 발굴 **1호 이종현동조한연합회** 설립 지원('20.10월)
 - *(예) 이종협동조합 공동으로 로컬푸드 사업 참여
 - → (기본법 협동조합) 생산 · 가공 + (신협) 금융 + (생협) 유통 · 판매
 - * '203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신협 · 생협 간 연합회 구성 가능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 ·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아카데미** 확충 : ('19) 8개 → ('22) 12개(목표)
- ■성장형 협동조합 지정기준(업력, 매출·고용 증가율 등 고려) 마련 및 공동사업 추진
- ₫업 모델 공공기관·대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 ① (한국도로공사·hi-shop 협동조합) 고속도로 휴게소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정식 납품업체로 전환(19년~)
 - ② (굿잡 5060) 현대차가 기획 및 재정ㆍ시설 등 지원 + 지자체 홍보, 구직자 모집,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적기업이 취업 알선('18년~)
- 대안적 사업모델 보육 · 노인 등 돌봄수요 확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 증가 등에 대응한 **사업모델** 개발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대(現 6개 시범사업 → 단계적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강화?
 - 1) 돌봄매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돌봄 수요 · 공급 연계
 - 2)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보건의료 · 요양 등 서비스 연계 · 제공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수 : ('20) 42개 → ('22) 150개(목표)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¹⁾ 사업고용협동조합²⁾ 모델 활성화 추진
 - 1) 공유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지원,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20.下) 등
 - 2)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

◎ 민간판로 개척 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 ① 민간판로 개척 지원
 - ◆ e-store 36.5 확대 · 개편('20.下)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
 - 온라인몰 고도화: 모바일 웹 기능 강화, 제품체험단(소셜어답터) 운영 및 상품개선 지원, 입점절차 간소화, 소비자 맞춤상품 추천기능 구현 등
 - **민간시장 진출 연계 강화**('20.下~)
 - 지역(대구·경기·경남·전남·광주 등) 사회적경제 쇼핑몰 간 상품정보 교류 확대('20.下)
 - 유명 포털 등(네이버 해피빈 · 우체국쇼핑 등)과 온라인 기획전 등 협업 강화('21.上)
 - → e-store 36.5 거래 실적 · 목표(억원) : ('19) 11 → ('20) 20 → ('21) 30
 - 오프라인 유통채널별(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전문벤더 양성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문 유통조직(소셜벤더) 발굴 · 육성 지원
 - * 상품 발굴(MD 기능) 및 품질 개선 권고, 유통채널 진출 연계, 기획전 개최 등
 - * 現 민간벤더 5개소 시범선정 · 운영 중.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확대여부 검토
 -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출 역량진단 ·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마련 · 운영
 - * 사회적경제기업-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해외 팝업스토어(K-Social) 운영,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KOTRA, '21~)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캠페인("Buy Social")¹⁾계기, **소비촉진** 프로모션²⁾실시('20.下)
 - 1) 英 사회적경제기업 시장확대 캠페인, 라이센스 취득으로 국내 도입ㆍ시범실시
 - 2) 추석연계 판로 기획전, CSR과 연계한 가치소비 캠페인 실시(9~10월 중)
 -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촉진 행사 및 농협 등 대규모 유통채널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 · 활용 기회 확대

- 「**코리아세일페스타** ('20.11월). **"사회적경제 전용관"** 개설 추진
- **농협** ① 사회적경제 전용관·전용매대 확충('19년 51개 → '20년 55개)
 - ②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19년 390개 → '20년 600개)
 - ③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shop in shop) 개설('20.下)
 - ④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채널 다각화
 - ⑤ 농업 부야 종사 사회적경제기업과 계통계약* 확대
 - * 전국 하나로마트 상품공급을 위해 농협하나로유통과 공급업체간 체결계약

② 공공판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신설(「사회적경제」 기본법 : 「판로지워특별법 제정) 추진
-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 * 협력사업 발굴. 판로 · 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동반 해외진출 등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확대
 - * (현행) 5천만원 → (개선) 1억원 (「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20,7월말~12월)

◎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신보)
 - * 평가(수익성 ·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 우대(예: 2배까지 확대) 적용
- ◘ 협동조합에 대해 **우선출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20.10월)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추진
 - * (기존) 연간매출액의 1/2 또는 출자금의 3배 중 적은 금액 범위 내 (개선)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同 한도를 상향(예시: 출자금의 5배)

-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 · 민간 출자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사회투자펀드 펀드조성액
 확대(現 연 250억원 → 향후 연 500억원)
 - * (출자금액) 200억원 → 300억원, (민간 출자비율) 20%(50억원) → 40%(200억원)
-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19년 신보 개발) 활용 확대(現 9개사 → '21년 50개사)
 - * 기업철학, 사회환원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사회적가치 등급을 산출하는 모형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이용희망 기관 · 단체에 무상제공, 표준평가시스템 上 평가 우수기업 pool 조성, 관계기관에 제공

3.2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 ◎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 지역별 소설캠퍼스 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
 - * (소셜캠퍼스 온) 창업 기업 인큐베이팅(1단계)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성장기 기업(2~3년차) 사업모델 개발(2단계)에 집중
 -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별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 예시
 - (경남) **판매 · 전시** 특화 → **로컬푸드** 기업 등 입주기업 확대 추진(*20.下~)
 - (전북) **컨설팅**(업종전환 등) 특화 → **당사자조직 집적화** 등 네트워크 구성('20.下~)
 - (대전) **기술 사업화** · **상품화** 특화 → **과학자협동조합** 등을 위한 혁신공간 제공(*21~)
 - (대구) **문화예술** 특화 → **노후산단** 내 일반기업의 **업종전환** 유도('21~)
 - (충남) **농식품업** 특화 → 도내 농식품 **물류 · 유통 · 가공 · 판매**채널 구축에 집중('21~)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 1 지역의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문제해결형 R&D 활성화
 - (주민참여형) "SOS랩" 사업 평가시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에 가점 부여('21~)
 - * 지역주민 스스로 대기환경 · 재난대비 · 아동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SW · IC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조직(Solution in Our Society Lab)
 - * 예: 대전,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셜벤처 참여.
 - (컨소시움형) 지역별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산·학·연 컨소시움 대상 R&D 및 사업화 지원
 - * 시도별 제조(8) · 식품(7) · 에너지(3) · IT · 문화(10) · 사회서비스(5) 33개 품목 선정
 - * ('20) 21개(신규) → ('21) 25개 프로젝트 추진
 - ◘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및 일자리 개발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자원뱅크" 시스템** 구축(3차 추경)
 - * 총 34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역경제 특성과 주민의 정책수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 시설 · 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데이터화(사회적기업진흥원)
 -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 · 창업 연계를 추진
 - * 지역 사회적기업 탐방,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그램 신규 운영('20.下) → 프로그램 수료자 대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추가 마련 검토('21~)

②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대

- ◇ **농업 · 산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 · 성과 지속 확대
- (농업) 사회적농장(現 30개소)의 수익창출 지원
 - * 사회적농업(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을 실천하는 농장
 - * 사회적농장 : ('20) 30개소 → ('21) 50개소(목표)
- (**산림)**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 육성 확대("**산림일자리발전소**")
 - * ('19) 133개 → ('22) 250개(목표)
- (관광)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육성 확대
 - * (1년차) 발굴 · 사업계획 수립 (2년차) 창업 · 시범사업 운영 (3년차) 운영 · 경영 지원
 - * ('19) 113개(신규) ('21) 215개
- ◆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속 확대
 - *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내용을 적시토록 유도
-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 (現) 10개소 → (²²) 48개(목표)
- * 표준사업모델 마련, 운영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사업고도화 지원
- (농촌신활력)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의무화

(現) 60개 시 · 군, 300개소 → ('22) 100개, 500개소(목표)

- *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커뮤니티 및 창업 공간 조성 등 지원
- □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 적극 검토
 - *(예) ① 친환경 ·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 · 리모델링 그린
 - →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실시
 - ②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등 도심녹지 조성 그린
 - →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숲 관리**체계 마련

◎ 상호금융 등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지역기금 조성 활성화 등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금) 기금 설립 · 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 확산(사례집 발간, '20.下)
 - * 서울시·화성시 기금 旣 조정·운영, 충남 조성 중, 경남 '20.6월 관련 조례 의결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법 재입법 추진
 - * 지자체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등을 보전(現 서울시, 경기도 시행 중)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20.8월 의원입법안 발의)
-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
- 지자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 内 **상호금융기관** 참여를 제도화(조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20.下)
- (신협) 사회적경제기업 등 他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신협법」 개정)
-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 공급
- * 연차별 목표(억원, 누적) : (대출) ('19) 20 → ('20) 110 → ('21) 210 $(71부) ('19) 13 \rightarrow ('20) 23 \rightarrow ('21) 33$
- (농협) 비농업법인 중 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 법인 대상 여신지원상품 개발 검토
- (수협) 지역 상호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 · 공급
- *(현행) 수협은행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전용상품 공급(5건 7억원 실적) → (개선) 수협은행 + 지역 상호금융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 · 공급
- (신보·농협) 지역 내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대출 지원 → '20~'22년 총 375억원 공급(1년 거치 9년 상환 조건)

사회적경제의 진출분야 다양화

- ⑥ 환경 ·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수도 관리 등 환경 · 자원 순화분야 진출을 촉진
 - **녹색제품** 인증비용 지원 등 **특화지원** 강화('21~)
 -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의 자활사업화
 - : (기존) 마을이장 등에 시설 운영비 지원 → (개선) 자활기업에 운영 · 관리 위탁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통해 '22년까지 약 5,000명 일자리 창출
 -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산 추진
 -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추경 365억원, '20~'25년 예산 총 2.335억원)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에 대한 지역주민 투자시 장기 저리융자 지원
 - **우리그린마을공동체**(마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 공동체) 확산 추진 ('21년 시범사업 실시)
 - *(예) 서울 상도동, 에너지 협동조합 발족, 태양광 설비 주민공동 설치 · 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 공적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복지부 지침 개정 '21~)
- * (현행) 참여시 우대 → (개정) 사업계획 제출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의무화
-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촉진(운영비 등 인센티브 제공)
-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수(개): ('19) 14 → ('20) 150 → ('22년) 300(누적)
- **돌봄 수탁기관**(아동 등) 선정 · 평가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반영 확대
- * (~'22)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완료
- 설립 · 운영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형 설립 확산 검토
 - * (예) 인적(개원의 참여허용 등) 및 자본(설립 이후 총자산 중 출자금 비율 완화) 규제 등
- ◆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 (예)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식사 및 방과 후 체험활동 제공(식자재 공급-도시락 제조·배달 업체-교육 서비스 제공 업체 등 컨소시엄 구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등 참여 · 활용 방안 적극 검토
 - *(예) ①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IoT · AI 활용 디지털 돌봄 디지털
 - → 의료사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 내 디지털 돌봄체계 구축
 - ② 이러닝 · 가상훈련(VR · AR) 콘텐츠 개발 확대 디지털
 - → 보육 · 의료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 · 온라인화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20.下 시범사업 실시). **맞춤형 실무교육** 등 추진
 - * (예) 은퇴 소방관을 연계해 복지시설 등에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하는 소셜벤처 \rightarrow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소방안전 관리 솔루션 등 온라인 연계
 - * 의료 · 교육 · 오피스 등 비대면 분야 및 기본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 ◆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 확대(기보)
-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교육¹을 실시하고, 창업지원사업² 규모를 확대
 - 1)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KOICA) 참가자 대상 소셜벤처 창업교육 등 실시
 - 2) 예비창업패키지 지원확대 : ('19년) 1.500개 → ('20년) 2.200개計(3차 추경 포함)
- 취약계층 등 대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일경험 지원 등 디지털 · 안전망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설벤처 참여 확대 검토
 - * (예) 초중고 전체교실 WiFi 설치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디지털
 - → 취약계층 학생이 방과 후 활용가능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휴먼
 - → 발달장애인의 집중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AI 일자리 제공

- ◎ 문화 · 교육 · 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 문화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 분야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 (문화예술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 사업전환 컨설팅 시행('20년 15개)
 - 컨설팅 결과, 우수 협동조합은 초기 사업비 지원 연계('21~)
 - (관광두레) (현행) 최대 5년간 육성 → (개선) 5년 경과 후 사회적기업 전환 등 지원
 -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육성) 실감콘텐츠, 원격 스포츠 지도, 온라인 예술활동 등 비대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 디지털
 - * ('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의 10%를 '유망분야'에서 지정 → ('21년) '유망분야' 지정 20%까지 확대
 - 교육 교복 공동구매. 창업활동 활성화 등 학교 협동조합의사업모델 다양화 지원(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 * (예) 안전한 먹거리 매점 '먹고 가게'(유기농 식품 판매. 이익금 장학사업 등 활용), 창업 프로그램 '봉봉 마켓'(학생이 친환경 수익상품 직접 기획)
 - 과학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이공계생 대상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 · 경영 컨설팅**(*20년 600명)
 - * 크라우드펀딩 및 협동조합 간 협의회 구성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소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은 공공조달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 상품몰, 판로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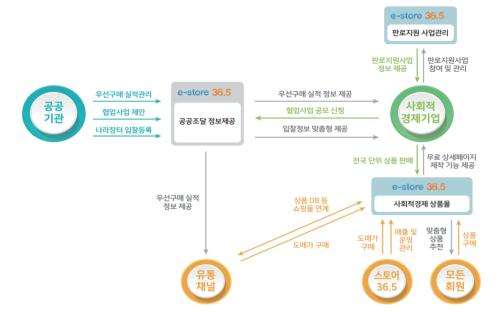
▮ 운영 현황



e-store 36.5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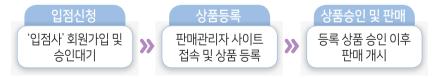


▮ 사회적경제 판로지윈 통합플랫폼(e-store 36.5) 구조도



e-store 36.5 입점 안내

- 입점 현황 ('20년 10월 기준)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1,418개소, 21,563개 상품 입점
 - * 공공기관 회원 등 5,416명 회원 이용
- 입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 입점상품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서비스)
 - * 단순 유통제품 입점 불가
- 입점신청 및 상품등록 절차



- 판매관리자 사이트 : https://www.sepp.or.kr/seller
- 입점 기업·상품 정보 현행화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요청에 의해, 연 1회 정보 현행화 실시
 - * 정보 미현행화 시, 상품 노출/판매 중단

붙임 2.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

Buy Social

바이소셜(Buy Social)캠페인

바이소셜은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당신이 구매한 가치는 얼마인가요?

당신이 구매한 사회적경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mark>무한대(∞)의 가치</mark>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비가 모두를 위한 가치로, 바이소셜(Buy Social)하세요

BUY SOCIAL SOCIAL VALUE

Buy for People "사람을 위합니다" Buy for Life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00

Buy for Local "지역 상생을 추구합니다" 00 Buy for Earth "환경을 생각합니다"

TOTAL :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법





BLOG blog naver.com/se365company | STORE www.sepp.or.kr INSTAGRAM @kosea_365 | FACEBOOK www.facebook.com/social365 | YOUTUB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WITTER www.twitter.com/social_365 | KAKAO PLUS pf.kakao.com/_xkbrDxl



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소셜 하세요!

[우선구매]가 만드는 변화!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며.
-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 "착한 소비" 문화, 바이소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시작, 우선구매에 함께 해주세요!

바이소셜(Buy Social)이란?

나의 일상, 우리의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바이소설은 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나의 소비가 처형에 미칠 변화를 생각하는 것,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이소설할 수 있답니다.

바이소셜 히스토리

바이소셜 캠페인은 2012년, SEUK(영국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시민, 기업과 공공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마타다, 이탈리아, 태국 등 전 세계가 바이소셜에 통참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한국도 '바이소셜 선언식'을 시작으로 힘찬 도약에 함께 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비누를 바이소셜하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H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맛있는 빵을

바이소셜하면

예술가의 멋진 그림을 바이소셜하면 발달장애인 디자이너의 활동을 응원할 수 있어요



장바구니, 텀블러, 손수건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바이소셜해요



동네 상권에서 우리 먹거리를 바이소설하면 안전한 먹거리 생산자를 도울 수 있어요



즐거운 공정여행으로 바이소설하면 여행지, 지역주민, 환경 그리고 나까지 행복한 여행이 돼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으로 바이소설하면 지구 반대편 어린이가 글자를 배울 수 있어요



나의 시간과 재능을 이웃과 나누는 봉사와 기부 모두 바이소셜입니다



붙임 3.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 평가지표

1. '20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평가주체: 기획재정부)

측정산식

평가지표 1.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50점)

• X = ('20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20년도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 × 100(%)

〈평정점(P) 산출공식〉

- X < 3, $P = 50(\frac{X}{2})$

 $-X \ge 3$. P = 50

*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 총액(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기준 참조.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은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공사 금액

1.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 3% 이상 : 일괄적으로 만점 50점 부여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 3% 미만 : 위 산출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평가자료

• 구매실적 자료

평가지표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향상도(50점)

• A = {('20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19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19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100 (%)

〈평정점(P) 산출공식〉

- -A≦0%, P=0
- -0%(A<10%. P=5A)
- A≥10%. P=50

측정산식

- * '20년 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의 경우 동 지표를 제외한 '이행도'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1. '20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X)이 3% 이상인 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액과 무관하게 만점 50점 부여
- 2, '20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X)이 3% 미만인 기관의 경우:

위 산출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19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0원인 기관인 경우, '20년도 구매율에서 '19년도 구매율을 차감한 수치(%P)를 A로 간주하여 향상도 산출공식 대입

평가자료 • 구매실적 자료

2. '21년도('20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평가지표(평가주체: 행정안전부)

①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② 평가 지표	⑦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⑨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 사회적경제 구매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활기업, 중증장애인 시설을 인증(확인 및 지정 포함) 받은 기업 구매액) /					

- 산식 설명
- 총 구매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 용역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 사회적경제 구매액 : 사회적경제(8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사회적경제명	개 념	근거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 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처장이 지정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8조 4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 정하고 승인한 생산품	
마을기업 생산품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 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 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중 광 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

사회적경제명	개 념	근거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에 의거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 환경 조성 을 위해 인증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대상으로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물품·노무용역) 구매 확대를 통해 생산시설 중증장애인 직 업재활도모 및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

- 물품 구매 인정 :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마을기업

측정 방 법

- 물품+용역 구매 인정: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물품+노무용역 구매 인정 : 중증장애인

- 물품+용역+공사 구매 인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구매액

○ 목표치(%) : 총 구매액 대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	2,7	3.1	2,6	3.3	3.2	2,6	3.2	3.3	1.5	2,3	2,8	2,3	1.5	1.5	1.7	21

사회적경제 구매액

○ **평가대상:** 시 · 도(시 · 군 · 구 포함)

총

○ 평가기준일: 2020,12,31,

○ 사회적경제 구매비율

(단위 :백만원, %)

중증 (B/A)×100

장애인

구매율

구분 구매액 계 사회적 사회적 자활 마을 자활 사회적 (A) (B) 기업(예비) 기업 용사촌 기업 기업 협동조합 표준사업장 장애인 4 합계(@+6) 시스템 ㅇㅇ시도@ 구현 서식 시군구 합계(b) ㅇㅇ시 ㅇㅇ군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ㅇㅇ구

(5) 연계 시스템

6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총 구매액, 사회적경제 구매액

3. '21년도('20년 실적)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평가주체: 행정안전부)

지표명	지역상생발전							
대 분류	사회적 가치			중분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1.0			
지표정의		업으로서 사회 과 기여도를 평		히 수행하기 위	하여 추진한 지역 내 다양한 공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u>사회적기</u> - 장애인 9 - 중증장아	업 생산품 및 , 의무고용(1.0점), 인생산품 우선 : 제(0.5점), 경정	중소기업제품 구매(0.5점)	<u>' 생산품 구매 설</u> 및 기술개발제	일적(1.0점) 품 우선 구매(0.5점) 의한 과업확정)을 활용한 계약실			
세 부 평가방법	구 사회적: 사회적 협 생산	이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구분 득점 산식 비 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용역 구매율(%) ※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달성여부는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기관에서 제출 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붙임 4.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운영 현황

(2020년 11월 기준)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	강원	원주 토요점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110, 카페 닻별	033-763-2923
2	강원	원주 후레쉬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033-743-8383
3	강원	춘천 석사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3-3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033-253-0050
4	강원	춘천쿱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동내면 933-2 1층 〈쿱박스〉	033-256-0765
5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6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 중앙상가 1층	02-899-8972
7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8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031-316-0072
9	경기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031-938-9774
10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11	경기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031-902-3774
12	경기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13	경기	본오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031-437-8787
14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1층(송암빌딩)	032-343-0077
15	경기	분당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야탑동 757)	031-707-1024
16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5	031-715-6122
17	경기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031-347-0700
18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104호)	032-233-0072
19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032-326-1172
20	경기	수원영통점 (경기남부두레 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6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21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112-113호	031-435-0071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22	경기	시흥 정왕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시흥에코센터 2층	031-319-7521
23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제108-3호	031-413-0038
24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031-468-2800
25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26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032-342-0071
26	경기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27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031-319-7521
28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032-675-0072
29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6동 101,102호	032-621-7100
30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은행프라자)	031-311-3886
31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3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32	경기	인덕원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33	경기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031-889-8849
34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펠리스카운티아파트 아이파크상가내 102호~103호	032-652-0072
35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032-664-0081
36	경기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37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호	02-898-0071
38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39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1층 두레생협	031-683-3363
40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68-3 뜨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41	경기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사회적기업관 2층	031-511-5754
42	경기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031-919-9854
43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8-14	062-943-8216
44	대구	대구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벨리로13 진성빌딩 112호 마을의정원	053-959-0123
45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3-5 1층	042-224-7004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46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47	서울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02-445-8703
48	서울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3	02-975-7145
49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50	서울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마르쉐도르 3차 지하 1층	070-4432-3792
51	서울	낙성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02-883-8703
52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7호선 4번출입구 스토어36.5노원매장	02-3391-3650
53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54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두레생협	02-333-0518
55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1층)	02-2648-1005
56	서울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2단지 내 관리동상가 102호	02-2643-6077
57	서울	미성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21(신림동, 1층)	02-855-0495
58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미아동190-1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59	서울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02-537-8703
60	서울	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02-3492-9999
61	서울	방화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5 방화6단지아파트상가 105호	02-2662-6088
62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봉천동)	02-876-4490
63	서울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64	서울	북가좌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100 DMC 레미안102동 6호 행복중심생협	02-304-8704
65	서울	불광센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센터 1동 1층	02-357-6233
66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02-533-4578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67	서울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길19 상도브라운스톤상가 1층	02-826-3385
68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두레생협	02-3141-0518
69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생협	02-3423-0518
70	서울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02-2643-6060
71	서울	아현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상가 111호	02-365-0615
72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73	서울	연남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8 1	02-325-9955
74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두레생협	02-715-0518
75	서울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02-713-0615
76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77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폴리스 105호	02-356-6233
78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센터 1층	02-735-7161
79	서울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1 건영아파트 제상가동 1층 126호	02-934-7999
80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81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가길 12, 102호 (창4동 성당입구)	02-900-9958
82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두레생협	02-2692-7117
83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956-1	032-466-2341
84	전북	전북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063-277-9435
85	전북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별관 1층(효자동 2가)	053-251-3388
86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36.5제주점	064-749-2365
87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041-358-7161
88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60번길25-2 (구산남동732번지)	043-252-9484

붙임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 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 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I〉(수출지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20401 VIYE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최저임금 위반	-0.5점
()		임금체불	-0.5점
	신인도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1.75~+2.5)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품질향상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2억원 이상		최저임금 위반	-0.5점
표준평가	신인도 (-1.75~+2.5)	임금체불	-0.5점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Ⅲ〉(사회적약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201일 이사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최저임금 위반	-0.5점
(Ⅲ)		임금체불	-0.5점
	신인도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1.75~+2.5)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Ⅳ〉(수요자선호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JOHOL VIYE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최저임금 위반	-0.5점
(IV)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I 〉(수출지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00401 mlmf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최저임금 위반	-0.5점
()		임금체불	-0.5점
(· /	신인도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1.75~+2.5)	고용우수기업	+1점
	(1,70 120)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품질향상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 0.101 1-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2억원 미만		최저임금 위반	-0.5점
표준평가 (॥)	신인도 (-1.75~+2.5)	임금체불	-0.5점
(11)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Ⅲ〉(사회적약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2억원 미만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표준평가		최저임금 위반	-0.5점
()	신인도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신인도 (-1,75~+2,5)	고용우수기업	+1점
	(1,70 12,0)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Ⅳ⟩(수요자선호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00101 EIEI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최저임금 위반	-0.5점
(IV)		임금체불	-0.5점
(,	신인도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신인도 (-1,75~+2,5)	고용우수기업	+1점
	(1.70 12.0)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붙임 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매 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단.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부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 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로서 동일 예산 사업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 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 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2항의 공고기간 만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 및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 제5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제안품목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공동수급체 내 구성원들간에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 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가 등록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2단계 경쟁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매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 등 총 5인(각 공동수급체는 계약상대자 1인으로

간주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기준 제6조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목적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공동수급체 및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기준 제9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가 기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 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74(점)$$
X $\frac{3(억원)}{6(억원)}$ + $60(A)$ X $\frac{2(억원)}{6(억원)}$ + $66(A)$ X $\frac{1억원)}{6(억원)}$ = 68(점)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 (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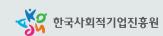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가점	0.4	0.6	0.8	1

- 제10조(납품 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 별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이행 관리 등에 대하여도 각 구성원별로 진행하여야 하다
- 제11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새로운 납품요구 절차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는 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하다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Tel. 031-697-7700 Fax. 031-697-7889

www.socialenterprise.or.kr